

# 1949~1962년 중국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민족정체성

김광희\*

## 〈차 례〉

1. 머리말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조선인의 회귀
3. 한국전쟁 기간 조선인의 입북
4. 북한의 노동력 수요와 조선족의 입북
5. 1960년대 초 조선족의 불법 입북
6. 맺음말: 인구 유동과 정체성의 정립

## [국문초록]

중국으로 이주하던 조선인이 반대 방향 즉 한반도로 역류하게 된 변곡점은 일제의 패망이었다. 조선인의 한반도 귀환 고조는 광복 후 약 2년 간이었는데, 그간 재중 조선인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여만 명의 조선인이 귀환했다.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조선족의 귀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쟁 발발 전야에 수만 명이 귀국하였고 전쟁 기간에는 또 지원의 명목으로 수만 명의 인구이동이 있었다. 휴전 후 북한 정부가 경제 재건에서 부닥친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돕기 위하여 조선족의 북한 이주를 조직했다. 중국 정부가 이주를 조직하자 한반도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6만여 명의 조선족이 북한으로 이주하였고 북한 국적에 가입했다. 중국 조선족의 대규모 불법 입북은 1961년과 1962년에 최고조를 이루었는데 2년도 안 된 기간에 “脫중국” 조선족이 근 10만 명에 달했다. 조선족의 북한 유출에서, 중국 정부는 언제나 북한의 의견을 수용하고 북한의 입장을 배려했다. 물론 한반도 조국 관념이 일상적 유동의 사상적, 감정적 기초를 구성했으며, 조선족들이 대규모로 북한으로 귀환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북한으로의 유동과 민족 정체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계속 중국에 남았거나 입북하였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말하면 광복 후 1960년대 초반까지의 유동 과정은 한반도 민족 정체성이 점차 해체되고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정립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주제어] 조선족 디아스포라, 귀환, 정체성, 밀입북, 한반도조국관

\* 중국 연변대학교 역사학부 부교수

## 1. 머리말

조선인은 일제의 패망 후 중국으로 이주하던 반대 방향 즉 한반도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학계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연구성과가 광복 전에 집중되어 있다. 1945~1949년의 재중조선인의 귀환에 관해서는 그래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염인호의 『또 하나의 한국전쟁』(역사비평사, 2010)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선보였다. 그러나 1950년 이후의 재중 조선족의 북한 이주 실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후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으로의 근 10만 명의 귀환 실상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입소문으로 누구의 지인이 북한에 도망갔다는 설법이 태반이고 전반적인 규모나 실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수한 원인이 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민감한 정치 관계 때문에 중국에서는 북한에 관한 학술논문 발표가 불가능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역사에 집중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자신의 역량의 부족으로 재중 조선족의 북한 귀환 실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조선인의 회귀

1908년 연변의 조선인은 8.9만 명에 불과했지만 1930년 38.8만 명으로 증가했다.<sup>1)</sup>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1929년에 국적법을 개정하고 이중국적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1930년대 동북 지역의 조선인 거주민 중 중국 국적 취득자는 전체의 1/10도 되지 않았고, 무국적 조선인들이 절대다수였다.<sup>2)</sup> 관념적 혹은 심리적으로 그들은 늘

1) 안용정 주필, 『연변조선족자치주지』, 북경: 중화서국, 1996, 254~277쪽.

2) 손준일·김영숙,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중화민족 대가정에 가입한 역사과정을 논함』, 『동강학간』,

자신들을 조선인으로 인식하였고 “조선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겼다. 광복 전 야 동북의 전체 조선인은 이미 216.3만 명에 달했다. 광복 후 동북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대규모로 귀향길에 올랐다. 약 70만 명이 한반도로 돌아갔으며 1947년에 동북의 조선인은 140만 명이였다. 그중 대부분은 공산당의 해방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에 거주한 지 이미 2~3대가 지났고 주로 연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다.<sup>3)</sup> 광복 후 조선인의 애향심은 더욱 높아져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sup>4)</sup> 이는 중공이 동북지역 혁명과 해방구 정권 건설 과정에서 직면한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인에 대해 이해가 깊었던 주보중<sup>5)</sup>은 1946년 12월 “중국공산당은 조선인에 대해 소수민족으로서의 평등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sup>6)</sup> 1947년 7월의 길림성당위 확대회의는 길림성의 조선인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선언했다.<sup>7)</sup> 물론 중공이 전국적인 정권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인은 중국공민신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재중 조선인의 정체성 문제가 중시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많은 조선족은 “몸은 하나지만 나라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민과 교민의 구분이 모호하였고 정부의 출입국 제한에 큰 불만을 나타냈으며 불법 월경이 빈번했다. 귀환의 중심지인 도문에서는 한반도로 귀환하려는 사람들이 쇄도하자, 돈을 받고 강을 건네주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조선이 조국”이라는 생각이 농후하여 소수의 당 간부를 포함한 조선인들은 북한으로의 귀국을 요청했고 더욱이 청년 학생과 지식인 중에서 조국 관념이 비교적 강했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한 것은 훈련을 거친 간부들

2006년 제4기.

- 3) 손준일, 『중국조선족이민사』, 북경: 중화서국, 2009, 636쪽.
- 4) 조봉빈, 『나의 인생 자술: 한 조선 가족의 변천史錄』, 북경: 민족출판사, 2013, 86~87쪽.
- 5) 주보중(1902-1964)은 운남성 출신의 바이족이며 운남육군강무당을 졸업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지도자의 한사람이었다. 항일연군 지도자 중에서 주보중만이 러시아어가 가능하였기에 그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였다. 특기할 것은 그가 길림성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다.
- 6) 중공연변길동길돈지위 연변전원공서, 『重要文件彙編』 제1집, 358~359쪽.
- 7) 중공길림성위당사연구실 편, 『동만근거지』 199-4, 50~53쪽, 312쪽.

과 작전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었기에 대규모 입북은 허락되지 않았다.<sup>8)</sup>

북한은 필요한 조선인 장병들을 주동적으로 선발해서 데려갔다. 예컨대 동북군정대학은 조선을 위해 적지 않은 인재를 육성하여 귀국시켰다. 1946년 8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동만분교는 약 300여 명의 학생을 북한으로 귀국시켰다. 이는 교내 전체 조선족 학생(2,080명) 사이에서 큰 반향과 충격을 일으켰다.<sup>9)</sup> 1947년 5월 북한은 길림분교 출신 제1기 조선족 학생 중 50명을 선발하여 평양으로 데려갔다. 7월에는 제2기 졸업생 중 100명의 조선족을 다시 선발하여 북한으로 귀국시켰다. 88국제여단 간부들이 소련에서 귀국할 때 중국공작단과 조선공작단으로 편성되었는데, 김일성은 회고에서 주보중이 일부 조선인 간부들을 자신의 공작단에 배속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sup>10)</sup> 중국공작단에 배속되었던 조선인 간부들은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강신태와 함께 연변으로 온 최광, 박낙권, 강위룡, 김창봉 등 22명과,<sup>11)</sup> 또 한 부류는 김광협과 함께 목단강으로 간 유창권, 황동화, 김동규, 조명선 등이었다. 이들도 얼마 안 되어 선후로 귀국했다.

1948년에 국민당 구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귀환을 위해 대거 연변으로 몰려들었다. 연변의 조선인 중에도 귀국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 무렵 연길, 용정 등지에서는 지방정부가 조선인들이 대거 귀국을 요구하자 遷居 증명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조선인들의 대규모 귀환을 절대 금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귀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遷居 증명을 발급할 때는 자격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했다.

① 호주가 북한에서 직업을 얻은 상태에서 가족의 귀국을 요구할 때, 군 이상의 북한 측 증명을 가지고 있는 자. ② 퇴역 내지 퇴직 후 직장을 인배 받지 못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귀국을 요청할 경우, 근무하던 부대 및 기관에서 증명하고 북한 방면에서도 동의하여야 함. 그리고 도시 노동자의

8) 『중국지구 한인 귀환과 정책』 제6권, 71~72쪽.

9) 김지운, 『조선족군정간부의 요람』, 『연변대학학보』 1986년 제4기, 118쪽.

1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249쪽.

11) 중공연변주위당사공작위원회 당사연구소 편, 『연변역사사건 당사인물록』, 1988, 248~249쪽.

경우 퇴거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미 토지개혁이 끝나고, 공장노동력도 과잉이므로 북한으로 귀환하면 생활이 어려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지 정착으로 유도했다. 또한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북한에서 이미 신입생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가을 모집까지 기다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권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가산을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귀환이 이뤄지지 못할 것에 대비한 것이기도 했다.<sup>12)</sup> 그럼에도 귀환 신청이 급증하자, 중공 동북행정위원회는 1948년 8월 5일 〈조선인청구귀국잠행방법〉을 반포하여, 귀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모든 귀국신청자는 소재지 현 단위 이상의 정부에서 비준을 받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동의 회신을 받아야만 귀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3)</sup>

사실 당시 중국 정부는 “조선인”이 과연 중국 국민인지 아니면 조선 국민인지 관해서도 확실한 견해가 없었다. 이에 8월 15일 연변당위원회는, 연변에 거주하고 호적을 등기한 조선인은 중국 국민, 가족은 북한에 있지만 가장과 재산이 연변에 있는 조선족 거주민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상시 조선을 오가는 조선인 거주민도 중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호적 등기를 하지 않은 자 혹은 비준을 거쳐 북한으로 이주한 후 다시 돌아온 자는 일괄 북한 교민으로 규정했다.

### 3. 한국전쟁 기간 조선인의 입북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특히 한국전쟁 기간 조선족의 유동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민해방군 중의 조선족 부대와 중국 지방정부가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조직한 간부, 의사, 운전수 등이었다. 휴전 후 이들은 북한에 남겨나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sup>14)</sup>

12) 『연변전원공서지령』 1948년 2월 27일, 『연변당안관』 제3호 권종 3-3호 목록, 제4호 안관.

13) 『중국지구 한인 귀환과 정책』 제6권, 454~455쪽.

1950년 1월, 중앙인민혁명군사위원회는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대원들을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이처럼 결정한 데는 북한의 요청도 작용했지만, 다른 한편 조선인 대원들 스스로가 귀국을 열망했기 때문이었다. 평진전역이 끝난 후 156사단의 조선인들은 화북이 해방되었으니 중국 문제는 중국 동무들에게 맡기고 조선동무들은 동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4야전군 사령관 임표는 1950년 1월 초에, 중국인민해방군이 長江 남안으로 도하한 뒤 조선인 병사들이 동요가 시작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원했다고 보고했다. 164사와 166사의 입북에서도 조선인 대원 자신들의 귀국 열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164사 간부 중에는 “북조선의 군대는 장비가 좋고 생활이 윤택하며 등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귀국하기를 바랐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죽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한다. 어떤 “동지들”은 중국인 간부와 잘 지내거나 공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조선인 간부를 “식민지 사상”이 있다며 배척하기까지 했다.

중국공산당도 그간 재중조선인의 한반도조국관을 인정해왔다.<sup>15)</sup> 중국공산당이 조선인 병사들이 귀국에 동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즉, 그들은 원래 조선인이고, 당시 귀국을 요구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들이 필요했으며, 중공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주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국시키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민해방군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조선인은 47,764명을 초과했다.<sup>16)</sup>

한국전쟁 기간 중국으로 온 난민의 수에 관한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다. 연변 지역에 국한하면 1953년 북한 난민은 11,728명이었으며 휴전 이후 6,862명은 귀국하였다. 남은 인원은 중국 거주 교민이 되었다.<sup>17)</sup>

대체로 조선인들은 전쟁 초기 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휴전 이후 재차 북

14) 김경일, 「중국군 중의 조선장병들의 조선 귀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사학집간』 2007년 제3기.

15)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서울: 역사비평사, 2010, 298쪽.

16) 선즈화, 『최후의 천조』,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7, 240쪽.

17) 안용정 주필, 『연변조선족자치주지』, 북경: 중화서국, 1996, 503쪽.

한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인과 중국 조선족의 구분을 더욱 어렵게 했다. 1950년 11월, 동북인민정부 공안부는 조선족이 중국적에 가입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일본 투항 이전부터 동북에 거주하던 자, 일본 투항 이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동북에 돌아와 가옥,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자, 일본 투항 후 토지와 가옥을 분배받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자”로 한정했다.<sup>18)</sup>

1949년 9월 조선족 대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조선족 주민의 국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1952년 말, 천진시 외사처는 현지의 북한 교민들이 빈번하게 중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보고했다. 얼마 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시 11,000여 명의 조선인이 연변으로 왔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북한 이민들의 국적 문제라고 보고했다.<sup>19)</sup>

1953년 4월, 동북국은 중앙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선족 주민의 국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그러나 연변 등지와 북한은 강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인민들이 왕래가 밀접하고 상황이 복잡하여 중국 거주 북한 교민과 중국 조선족 주민이 뒤섞여 구분이 어렵다. 현재 북한은 전쟁 상황에 처해있고 많은 조선인이 중국 국적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북한 친구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에 대해 동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49년 10월 전에 동북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모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대우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인이 북한 교민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동북국은 일부 구체적 처리 방법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sup>20)</sup> 6월 28일 주은래와 등소평은 모택동에게 동북국에 보낸 답변 초안을 제출하면서, 동북국의 처리 원칙에 동의를 표시했다.<sup>21)</sup>

8월 17일 중공중앙은 동북국에 보낸 답변에서,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

18) 한철석 주필, 『장백조선족자치현지』, 북경: 중화서국, 1993, 287쪽.

19)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0175-01, 1~3쪽.

20)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0018-01, 1~7쪽.

21) 『등소평연보(1904-1974)』, 1125쪽.

로 재중 조선인들이 국적을 구분한다는 기본원칙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각각 처리하도록 하였다. 1) 동북에서 가정을 꾸린지 오래되고 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나중에 북한으로 갔지만,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중국 조선족으로 인정한다. 가정은 북한에 있지만, 자신은 동북으로 와서 사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는 북한 교민으로 구분한다. 2) 한 가정이 중국 북한 양국에 각각 나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가정의 주요 구성원이 북한에 있는 자는 북한 교민으로 처리하며 가정의 주 구성원이 동북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조선족으로 처리한다. 만약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희망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3) 중국 조선족과 1949년 10월 1일 이후 중국에 온 북한 교민이 결혼한 경우, 만일 본인이 국적 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국적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북한 국적을 가진 남자 혹은 여자 쪽이 중국 국적 취득을 요구하면 일정 기간 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중국 국적을 가진 남자 혹은 여자 쪽이 스스로 휴전 후 북한 국적의 남자 혹은 여자 쪽을 따라 북한에 가서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장려한다.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비준하도록 한다. 4) 부모 모두 중국 국적인 경우, 중국과 북한 어디에서 자녀를 출산했든지 간에 그 자녀는 중국 조선족으로 인정한다. 부모 중 한쪽이 북한 국적인 경우, 그 자녀가 북한에서 출생하였다가 지금 중국으로 왔다면 북한 교민으로 인정한다.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중국 조선족으로 인정하고, 만 18세가 되어 국적 변경을 희망할 경우 자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sup>22)</sup>

지시는 후에 재중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조선족의 국적 문제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정서에 특히 주의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당연히 만족했다.

22) 『중국외교부당안관』, 108-00018-02, 13~15쪽.



#### 4. 북한의 노동력 수요와 조선족의 입북

많은 조선족 가정이 중국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변경지역의 왕래에 대해 쌍방은 줄곧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왔다. 1950년대 초, 양국 인원들이 동북과 조선을 왕래할 때 여권과 비자를 면제하였다. 중국 인들은 각 성, 시 공안기관에서 출국여행증을 발급받으면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조선 주민은 내무성에서 발급한 통행증을 소지하면 동북 경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1953년 7월, 양국은 ‘중-북 변경 양국 거주민 국경 통행 방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국경을 통과하는 거주민들에게 현, 시 공안국에서 발행한 통행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1954년 2월, 동북공안부는 ‘중-북 변경지역 거주민 국경통과 통행증 발급에 관한 보충규정’을 반포하고, 통행증 발급에 일부 제한을 가해 원래 한 달 유효기간 내 왕복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단 한 차례만 통행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원칙은 “중국 내의 모든 조선족은 북한 귀환 여부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었다.<sup>23)</sup>

1955년 3월 중국과 북한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통행제도를 시행하고 출입국 관리를 다소 강화한다고 합의했다. 변경지역의 주민과 북한 교민, 그리고 업무 관련 인원들 외에는 모두 여권과 비자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행증이 여러 곳에서 발급되었고 출입국 지역이 분산되었으며, 특히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 북한의 건설을 위하여 북으로 가는 조선족과 북한 교민들에 대한 신분증 관리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따라 편도 임시출국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통행증의 발급 수속 역시 매우 간단했다. 북한 공민이 중국의 친척을 방문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경우 신청 수속은 더욱 간단했다.

휴전 후 북한 정부는 상당 기간 대규모 인구가 절실했다. 특히 기술 혹은 특수 노동력이 매우 필요했다. 동북 변경지역의 출입국 관리 및 조선족의 북한 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리 방침은 대체로 북한의 노동력 수요를 배려

23) 『라지레프 일기』 1954년 5월 27일, KM010501.

하기 위함이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53~1954년 북한은 간부들까지 육체노동에 참가시켰다. 1963년 농사에 투입된 노동자와 간부는 20.7만 명에 달했다. 북한은 대학생들도 매년 한 달간 의무 노동에 참가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정부가 더욱 주목한 것은 재외 조선인들을 귀국시켜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재중 교민과 조선족은 잠재적 노동력이었다. 귀국 절차가 재일조선인보다 편하였고 인원수에서도 소련의 고려인들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재중 조선인들은 북한 정부의 큰 주목을 받았다. 1954년 5월, 동북과 내몽고의 일부 조선족과 북한 교민들이 경제건설을 위해 북으로 가겠다고 신청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비준했다.<sup>24)</sup> 1955년 8월 북한 정부는 교민 기술자들의 귀국 협조를 중국에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관례를 깨고 그들이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교민의 귀국 경비는 원칙상 자기부담하게 했지만, 상황이 어렵고 북한 측도 돌보지 않는 자에 한해,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교민은 한계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귀국을 신청한 자가 많지도 않았다. 인원수가 많고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동북의 조선족들이었다.

1957년 말까지 조선족 중에 북한에 가서 건설에 참여한 인원은 이미 5만여 명에 달하였지만, 이후 돌아온 사람은 4만 명뿐이었다.<sup>25)</sup> 1958년 2월 주은래가 북한을 방문하여 인민군 장군들과 회견할 때 그들 중 상당수가 연변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환담에서 어떤 이는 연변 조선족들은 북한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주은래는 김일성에게 그러한 조선족들을 이주시켜 인구를 늘리도록 제안했다.<sup>26)</sup> 그해 11월 중국 방문 기간 김일성은 조선족을 북한으로 이주시켜 경제건설에 참여하게 해주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4만 명의 동북 조선족의 북한 이주를 결정하고 그들이 봄철 농업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24)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0027-03, 4~5쪽.

25)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026-01, 13~20쪽.

26) 『중국의교부당안관』, 203-00111-04, 84~86쪽.

제1차 이주는 3월 말까지 북한에 도착시키도록 계획했다. 1958년 10월 중국 내무부는 문건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인의 결혼은 최대한 만류하고, 만류를 듣지 않아 그 결혼을 허락할 경우에는 남자가 북한으로 가서 가정을 꾸리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sup>27)</sup>

북한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족의 국적을 변경한 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조직하자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1959년 1월 18일 국무원은 길림, 흑룡강, 요녕, 내몽고에 중국 조선족을 조직하고 교민을 동원하여 북한으로 귀국하여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으로의 이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원은 북한으로 가서 건설사업에 참가하도록 비준받은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합영기업 자본가의 경우 출자금을 환불받을 수 없지만, 이자는 사전에 지불받을 수 있다. 합자상점 소매 상인의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출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국가 혹은 기타 공공자금 대출 미납자 혹은 상환하기 곤란한 자는 상황을 참작하여 감면하도록 한다.” 그해 길림 등 4개 성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조선족과 교민은 52,014명(북한 교민 1,084명을 포함)이었다. 그중 길림성은 36,274명 흑룡강성은 9,817명 요녕성은 5,583명이었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농민이었으며 그 다음은 공장노동자와 기술자들 및 소수의 간부였다. 이들은 북한에 도착한 후, 3분의 1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의 농촌에 배치되었고 3분의 2는 공장기업소에 분배되었다. 이번 이주 사업은 처음부터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특히 조선족 집거지에서는 촌이 부분 혹은 전원이 이주 신청을 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모두 원래 계획한 이주 숫자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길림성은 7,000가구의 이주를 계획하였으나 신청자는 2만여 가구에 달해 거의 2배를 초과했다. 요녕성과 흑룡강성의 신청자 역시 계획된 인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27) 『호북성당안관』, SZ67-01-0540, 6~8쪽.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조직적으로 조선족 주민을 계속 북한으로 이주시켰다. 예하면 1962년 4월 흑룡강 1개 성에서 1만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가 건설 사업에 참가했다.<sup>28)</sup> 1962년 여름 주은래가 연변을 시찰할 때, 주덕해는 자치주위원회 위원 강위룡과 석동수 두 사람을 북한에서 높은 처우를 주고 데려갔으며, “이곳의 지식인과 연예인 중 우수한 자들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보고했다. 교육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1,965년까지 연변 3개 대학의 3,200명 졸업생 중 북한으로 간 사람이 1,64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sup>29)</sup>

조선족은 주로 민족 정체성에서 비롯되어 북한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다. 북한 정부의 홍보가 더해지면서 이주 계획이 초과달성 되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희망을 충족시켜 대규모 이주를 조직했다. 동북 조선족 주민들이 중국에 대한 정체성이 보편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급히 이민을 조직한 방법은 조선족이 중국을 떠나도록 부추겼다. 따라서 북한으로 이주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주 조선족은 비준을 받아 국적을 북한으로 바꾸었다.

## 5. 1960년대 초 조선족의 불법 입북

동북조선족의 불법 입북의 주된 원인은 북한의 생활조건이 중국보다 좋았기 때문이었다. 북한 정부의 조선족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도록 장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1957년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 313명을 전원 귀국 조치하였지만, 북한 정부는 수백 명의 불법 입국자 중에서 27명밖에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이 불법 입국자들을 북한에 거주하게 해주길 바랐다. 1958년 2월 초 중국은 밀입국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북한의 견해에 따라

28)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028-03, 30~31쪽.

29) 『연변의 첫 번째 주자와 주덕해의 매국죄장』, 9~10, 15쪽.

처리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중국이 그들을 전원 귀국 조치한다면 조선은 매우 기쁘게 이들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sup>30)</sup>

중국이 변경지역 주민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빈곤과 생필품 부족 상태가 맞물리면서 동북 조선족들이 북한에 밀입국하는 현상은 수백 명 단위에서 수만 명 단위로 확대되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했다.

1961년 구정이 지난 후 동북 변경지역 조선족들이 “脫中國”의 서막을 열었다. 4월 5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올해 불법 입북 인원이 이미 1,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측은 북에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안치시키고, 친족이 없는 경우 최대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였으나 대부분은 완강히 중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sup>31)</sup>

요녕, 길림 두 성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4월 사이 북한으로 밀입국을 기도한 자는 4,701명이나 되었다. 그중 밀입국에 성공한 자들은 3,331명이었다. 5월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요녕성 공안청은 조선족들이 “무리를 지어 단체로 도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현재 불법 밀입국은 “개인 혹은 가구별로 야간에 도주하는 정도를 넘어 대낮에 공개적으로 무리를 지어 강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sup>32)</sup> 요녕성에서는 조선족으로 “저지대”를 조직했으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심양의 조선족 간부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의 고향마을에서는 모두 한 번쯤 국경을 넘어보았고 많은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되돌아왔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매일 정치학습을 하며 밤 10시가 되어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3)</sup>

중국 공안기관에 따르면 1961년 1월부터 1962년 3월까지 요녕과 길림의 국경지역을 통하여 북한에 도망간 인원은 38,590명에 달했다. 돌아온 이는 9,205명, 강을 넘다가 익사한 자는 252명, 나머지 29,133명은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다.<sup>34)</sup> 5월에 이르러 밀입북자는 71,0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30)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026-01, 33쪽.

31)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026-02, 53~55쪽.

32)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026-04, 58~63쪽. 118-01026-03, 82~83쪽.

33) 최경희의 교대자료, 1968년 11월 24일, 개인 소장.

성공한 사람은 55,000여 명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역시 부지기수였다.

1961~1962년 국경지역 주민의 대규모 밀입북 사건은 중국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가져왔다. 첫째, 노동력이 유실되어 생산과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차질을 가져왔다. 개산둔 펄프공장의 조선족 기술자 총 353명 중 113명이 일시에 북한으로 도망갔다. 연변가무단은 20명의 연예인이 입북하는 바람에 한 때 대형 행사를 연출할 수 없었다. 둘째,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왔고 범죄 현상이 크게 증가했다. 셋째, 국경 주민의 대규모 유동은 중국 북한 사이의 경제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연변자치주 국경무역 총액은 1959년에 471.8만 원에 달했으나 1960년에는 122.8만 원으로 급감했다.<sup>35)</sup>

1961~1962년 조선족이 대규모로 불법 입북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사람이 북한에 가게 되면 생활조건이 중국보다 좋다는 소문을 믿었다. 둘째, 동북 조선족 주민들은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중국에 대한 동질감이 부족했고 그들의 조국은 여전히 북한이라고 생각했다.

불법 밀입국 규모가 커질 때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에 따랐다. 중국이 이렇게 용인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분쟁 외중에 북한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으며, 단기적으로는 김일성의 방증을 앞두고 북한의 불만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1961년 7월 주은래와 김일성은 조선족의 밀입북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은래는 북한이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주겠다고 표시하고 김일성은 현재는 불필요하다고 표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주제 중국대사관에 월경 문제의 처리 방침으로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에 부적절하며, 북한 정부에 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sup>36)</sup>

대규모 인원의 갑작스러운 유입은 북한에도 부담이었다. 함경북도인민위

34) 『중국외교부당안관』, 118-01025-02, 1~3쪽.

35) 안용경 주필, 『연변조선족자치주지』, 북경: 중화서국, 1996, 326쪽.

36) 『중국외교부당안관』, 118-01026-07, 112~115쪽.

원회 노동국 지도원 안재수가 1961년 11월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처리를 중국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통고했다. “이미 건너온 2만여 명은, 대부분 공장과 농업합작사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밀입국은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북한에 도착한 후 직장 조건 혹은 생활 조건에 불만을 품고 계속 도망가고 있으며 이 숫자는 당시 이미 1,500여 명에 달했다. 남은 사람들은 노동국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골치가 아프다.”<sup>37)</sup>

밀입북 조선족들의 대규모 귀국 요청 역시 큰 문제였다. 1961년 길림성에서 자발적으로 돌아온 인원은 7,528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였다.<sup>38)</sup> 이들이 대규모로 대사관에 몰려와서 귀국을 요청하자 중국대사관 역시 매우 곤혹스러웠다. 북한의 정책이 “오는 것만 허락하고, 돌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조선족에 대해 대사관은 그들이 직접 북한 정부를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상황이 특수하고 귀국을 완강히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기는 대사관이 북한의 동의를 얻은 후 귀국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것이다. 월경자가 스스로 대사관을 찾아 귀국을 요청하는 경우 귀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sup>39)</sup>

중국의 조치는 북한의 입장을 따르고 영합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필요로 했던 것은 주로 노동력, 특히 고학력 인재들이었다. 대규모 유입이 골칫거리로 되자 북한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동을 걸었다. 1962년 3월 북한 외무상 박성철은 조선족들의 대규모 불법 입북이 발생한 것을 중국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조선족이 합법적으로 왕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은래는 “북한 측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다.<sup>40)</sup> 따라서 외교부는 박성철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전달했다. “북한 정부가 많은 이들에게 직업을 안배한 것은 우리를 도와준 것이며, 우리는

37) 『중국외교부당안관』, 118-01026-07, 125~128쪽.

38) 『중국외교부당안관』, 118-01025-02, 1~3쪽.

39) 『중국외교부당안관』, 118-01026-07, 118~119쪽.

40) 『중국외교부당안관』, 118-01025-02, 58~63쪽.

이에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과를 표하며 현재 이를 개선 중에 있다.”<sup>41)</sup>

이후 중국은 밀입북에 대해 “관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완화하되 방입하지 않고, 일 처리에 완벽”을 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하여 조선족에 대해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입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출국을 허가하고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귀국을 요청한 교민은 모두 허가하도록 하며, 국경지역에 “저지소”를 설치하여 불법 입국을 저지했다.

북한 역시 국경 관리를 강화했다. 1962년 제5차 중-북 국경경비회의에서 북한은 “출입국 문제에 엄격함을 유지해야 하며, 마음대로 오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도 4월에 국경의 18개 나루터를 3개로 줄였다. 1962년 하반기에 조선족들의 대규모 불법 입북 추세는 마침내 수그러들었다.

조선족의 북한 유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방면에서, 중국은 모두 북한의 의견을 수용하고 북한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 필요성이다. 북한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중공 중앙은 북한과 관계되는 문제를 처리할 때 “잘 처리해야 하고 절대로 잘못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바 있었다.<sup>42)</sup> 둘째,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소간 빠져나간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동북에 100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있는데 당신네 사람이자 우리 사람이다. 당신들의 병력이 부족하면 그곳에 가서 징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43)</sup>

41)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025-02, 4~6쪽.

42) 『중국의교부당안관』, 118-01784-01, 8~9쪽.

43) 1963년 4월 26일, 모택동과 조선 노동신문 대표단 접견담화기록.



## 6. 맺음말: 인구 유동과 정체성의 정립

조선인들의 북한으로의 이동 과정은 정체성의 변화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재중조선인은 모두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족의 관념과 정서를 고려하여 중공은 초기에 국적을 구분하는 명확한 정책을 제정하지 않았다. 1948년 12월, 연변당위 서기 유준수<sup>44)</sup>는 “연변 조선인들을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한 동시에 재중 “조선 인민은 과거에 자신의 조국-조선민주공화국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sup>45)</sup>고 밝혔는데, 이는 연변 조선인들이 동시에 2개의 국적을 갖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중 국적에 대한 인정은 과거 중공과 조선인들의 이중 사명 인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전승 관계를 가진다. 중공과 재중조선인혁명가들은 모두 일본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타도하는 것이 중국혁명의 승리와 조선 독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라고 보았기에 대일전쟁 과정에서 나의 속에 네가 있고 너의 속에 내가 있는 특이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8년 12월부터 1949년 2월까지 길림성당위에서 소집한 민족사업좌담회에서의 발언내용이 이러한 특점을 잘 보여준다. 동북행정위원회 민족사무처의 처장 주덕해 연변전원공서 전원 임춘추 연변일보사 사장 임민호 등이 회의를 주최했다. 회의에서 어떤 이는 “조선족의 조국은 북한”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多조국론” 즉, “무산계급의 조국은 소련이고 민족적 조국은 북한이고, 현실적 조국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연변지구 정권 설립에 대해, 임민호는 가맹공화국 건립을 주장하고 임춘추는 연변을 북한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했다. 주덕해는 상술한 두 의견은 “공상”이라고 지적하고 연변에서는 민족 자치를 실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952년 9월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성립할 때 상당수의 조선족은 이를 독립으로 오해했고 심지어 북한

44) 유준수(1904~1985)는 강서성 출신으로 모택동이 지도하는 중앙소비에트구역에서 혁명활동을 하였기에 중공공산당의 민족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깊은 요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45) 중공연변길동길돈지위 연변전원공서 『重要文件彙編』 제1집, 392쪽.

과의 합병을 요구하기도 했다.<sup>46)</sup>

1957년 5월 길림성위가 연길시에서 개최한 민족사업좌담회에서의 조선족 대표의 발언은 당시 조선족의 민족감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좌담회 첫날 역사교육연구팀 이수송은 현재 수많은 조선족은 북한이 외국이라는 생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변 조선족들은 당연히 북한을 “민족조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들은 북한과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관계를 수립할 것과 북한과 연변 사이의 관문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좌담회 이후 연변 제1서기 주덕해는 현재 조선족 중에 중국이 조국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대부분의 조선족은 중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욱 북한을 그리워한다고 보고하였다.<sup>47)</sup> 동북 조선족의 이러한 정서와 상황은 중-북 양국 사이의 일상적 유동의 사상적, 감정적 기초를 구성했으며, 조선족들이 대규모로 북한으로 귀환하는 기반이 되었다.

정풍운동에서 연변의 일부 조선족 간부, 사생들은 중국을 조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명했다. 일부는 북한을 “민족조국”, “제1조국” “감정조국”이라 부르는 한편, 중국을 “법률조국”, “제2조국”, “현실조국”으로 불렀으며, 소련을 “무산계급의 조국”으로 불렀다. 어떤 이들은 연변에 “노동당”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공산당은 “조선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했다.<sup>48)</sup>

신화통신사의 내부 보도에 따르면 반우파운동에서 연변의 지방주의에 대한 비판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했다. 1) “다조국론”과 “다당론”으로, 자치주를 자치구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를 포함하여 심지어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주장이다. 중국이 조국임을 부정하고, 중국공산당도 필요 없고, 노동당만을 원하며, 한족 간부들의 지도도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2) 민족적 특성과 차이점, 언어 순화 등에 대한 독자적인 강조이다.

46) 『하북성당안판』, 694-3-76, 5~8쪽.

47) 조봉민, 『나의 인생 자술: 한 조선 가족의 변천史錄』, 북경: 민족출판사, 2013, 149쪽.

48) 『내부참고』 제2393기, 1957년 12월 31일, 9~10쪽.

연변당위원회는 1958년 4월 정풍을 시작하여 지방 민족주의를 철저히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들에게 애국주의를 교육할 것을 결정했다. 4월 연변당 위 부서기 김명환은 지방 민족주의는 연변에서 한족과의 민족 동화를 반대하고, 연변의 특수화와 순수화를 주장하면서 ‘다조국론’을 제기하여 민족 분리주의를 고취한다고 하였다. “어떤 우파 분자는 한 개 민족의 조국은 ‘선조와 혈통’에 의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민족의 감정을 손상’하는 ‘치욕’이라고 한다.” 김명환은 “한 공민에게는 한 개의 조국이 있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른바 ‘다조국론’은 실재를 탈리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민족정풍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에게 두 개의 조국이 있다던 관점을 완전히 수정하고 조선족에게는 중국 ‘한 개 조국’만이 있다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민족정풍 후 연변 3개 대학 출신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북한으로 도망한 것은 재중조선인들의 한반도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북한에 도망간 사람들이 죄다 정착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북한의 고된 노동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이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길립성 당 부서기 오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주덕해는 돌아온 조선족들을 징계할 것을 건의했다. 모택동 주석은 조선족들은 북한에 가면 환송하고 중국에 돌아오면 환영하라고 지시하면서, 도망쳤다가 돌아온 조선족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축했다. 중국 측의 너그러움에 돌아온 조선족들이 안도하고 점차 조선족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요약하면 1960년대 초는 재중 조선족들로 말하면 한반도 정체성을 해체하고 중국 조선족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는 관건이 되는 변곡점이었다.

49) 김명환,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자!」, 『연변일보』 1958년 4월 26일, 제3면.

■ 참고문헌

『연변일보』 1958년 4월 26일.

『중국의교부당안관』, 북한관련자료.

중공연변길동길둔지위 연변전원공서 『重要文件彙編』 제1집.

안용정 주필, 『연변조선족자치주지』, 북경: 중화서국, 199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김태국 염인호 외, 『연변조선족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2006.

손춘일, 『중국조선족이민사』, 북경: 중화서국, 2009.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서울: 역사비평사, 2010.

신한청, 『한청항일혁명회상록』,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1.

조봉빈, 『나의 인생 자술: 한 조선 가족의 변천史錄』, 북경: 민족출판사, 2013.

선즈화, 『최후의 천조』, 서울: 도서출판선인, 2017.

김지운, 『조선족군정간부의 요람』, 『연변대학학보』, 1986년 제4기.

손춘일·김영숙,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중화민족 대가정에 가입한 역사과정을 논함』, 『동강학간』, 2006년 제4기.

김경일, 『중국군 중의 조선장병들의 조선 귀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사학집간』, 2007년 제3기.

# 1949~1962年期间中国朝鲜族向北朝鲜的流动和民族认同

金光熙

流向中国的朝鲜人，向反方向即向朝鲜回流的拐点为日本的败降。朝鲜人的回流高潮发生在光复以后的两年期间，相当于在华朝鲜人总数的三分之一的70多万人回流到朝鲜。朝鲜战争爆发之前到20世纪60年代初为止，中国朝鲜族的向朝鲜的流动经历了几次进程。朝鲜战争爆发之前回到朝鲜半岛的朝鲜族为几万人，战争期间为了支援又有几万朝鲜族流向朝鲜半岛。停战后，朝鲜在重建家园过程中遇到的最大的问题就是劳动力不足。中国政府为了支持和帮助朝鲜的经济重建，多次组织了朝鲜族的移民。由于朝鲜族原本的国家认同就是朝鲜，中国政府组织的时候就有6万多人参加了移民，并加入了朝鲜国籍。中国朝鲜族大规模逃向朝鲜为1961年和1962年，不到两年的期间“逃离中国”的朝鲜族将近10万人。在朝鲜族向朝鲜的流动过程中，中国政府总是收容朝鲜政府的意见，并照顾朝方的立场。当然，朝鲜半岛祖国观成为朝鲜族日常性流动的思想感情基础，并成为朝鲜族大规模向朝鲜回流的根基。向朝鲜的流动和民族认同之间有非常密切的关联，一直留在中国抑或逃离后再次回到中国的朝鲜族来说，60年代初为止的人员流动过程就是逐渐解构原朝鲜人认同，并确立作为中国朝鲜族的新的民族认同的过程。

**主题语**：朝鲜族，离散，回归，民族认同，非法入朝，朝鲜半岛祖国观